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기대 의원 외 12명

나. 의안번호 : 제2566호

다. 제출일자 : 2021. 8. 10.

라. 회부일자 : 2021. 8. 18.

2. 제안사유

- 현재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을 위한 점용허가 갱신 재산기준이 3억원 미만이며, 2년마다 재산을 신고하고 있음. 고령의 운영자들이 2년마다 재산을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예년 대비 자산한도액을 초과하는 운영자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생존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자산한도액기준 증액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한도액 기준을 증액하고 재산신고 주기를 조정하여 운영자가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3. 주요내용

가. 운영자의 자산자액 신고 주기(2년→3년) 및 기준금액(3억원 미만→5억원 미만) 변경(안 제3조제3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1. 8. 20. ~ 2021. 8. 27.

○ 제출의견 :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¹⁾

○ 제출의견 : 수정 가결

- 최근 급격한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자산가액을 조정하는 것은 적절함
- 그러나,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한번에 67%를 상향하는 것은 과하다는 부정적 여론이 예상됨

1) 보행정책과-10222호(2021.8.20.)

- 주택공시가격 상승률('21년 19.9%), 자산한도액 초과자의 규모, 전문가 자문, 시설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가액을 4억원~4.5억원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5.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도로점용허가 갱신시 자산가액 조회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한편 갱신조건의 자산가액을 현행 '3억원 미만'에서 '5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현재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등의 보도상영업시설물은 1,657개소²⁾가 운영되고 있고, 보도상영업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현행 조례 제3조³⁾에 따라 점용허가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시장⁴⁾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점용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는 도로점용허가증을 운영자에게 발급하고 있음

2)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21.6월 기준)

구 분	총 계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개 소	1,657	721	936

3)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허가)

- ① 시설물을 계속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점용허가 기간의 만료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점용허가를 받은 운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증을 내준다. 이 경우 점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 및 별표 : 도로점용허가 사무 구청장 위임

다만, 같은 조 제3항⁵⁾에 따라 매년 도로점용허가를 갱신하되 2년마다 운영자 및 배우자의 자산가액을 조회하여 자산가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갱신을 허가하고, 3억원 초과시에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후 갱신을 제한하고 있음

※ 참고 : 자산가액 산출 방법

▶ 자산가액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동산(주택, 건축물, 토지) + 임차보증금 + 금융재산} - 부채(임대보증금, 금융기관 융자금 및 사채)

※ 사채의 경우 공증인 증서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한하여 최고 1억원까지만 차감

○ '21년도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가격공시 자료⁶⁾에 따르면 서울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20년 14.73%, '21년 19.89% 상승하였고,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5)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점용허가)

③ 운영자는 본인 및 배우자 소유의 부동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3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임차보증금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융재산을 합한 금액에서 제4항의 금액을 차감한 자산가액을 2년마다 조회하여 그 금액이 3억원 미만인 사람에게 한하여 갱신을 허가한다. 다만, 자산가액 3억원 초과자에 대하여는 즉시 갱신제한을 하지 않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둔다.

6)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1.4.28.) : 2021년 공동주택 가격 공시

-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가격 현황

시·도별	평균가격(천원)	시·도별	평균가격(천원)
전국	253,279	경기	266,619
서울	526,215	강원	97,279
부산	202,885	충북	108,573
대구	215,198	충남	110,842
인천	177,609	전북	105,524
광주	158,886	전남	102,428
대전	201,459	경북	94,489
울산	170,910	경남	127,751
세종	408,839	제주	153,038

'20년 4억 40백만원에서 '21년 5억 26백만원으로 증가하였음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은 부의 축척수단이라기 보다는 생계수단인 점을 고려할 때 최근 자산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자산가액 한도를 초과하는 운영자가 증가하여 생존권 침해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산가액 한도를 조정할 필요성은 인정됨
- 서울시가 예측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산가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는 288명(17.3%)으로 지난 '19년도 재산가액 조회시 3억원 초과자가 17명이 이었던 점과 비교할 때 탈락예상자가 약 17배 정도 증가할 우려가 있음

※ 참고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순자산 추정 (단위 : 개소, %)

계	2억원 미만	2억	2억5천	3억	3억5천	4억	4억5천	5억원 이상
		이상 2억5천 미만	이상 3억 미만	이상 3억5천 미만	이상 4억 미만	이상 4억5천 미만	이상 5억 미만	
1,657 (100.0)	1,109 (66.9)	130 (7.8)	130 (7.8)	110 (6.6)	91 (5.5)	53 (3.2)	10 (0.6)	24 (1.4)

※ 서울시 내부자료

- 또한, 동 개정조례안과 같이 자산가액 기준을 5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더라도 24명 정도가 갱신이 제한 될 것으로 추정되

어 과거 갱신제한 사례와 서울시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 수준 등을 고려할 때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시한 5억원은 어느 정도 이해된다고 할 것임

※ 참고 : 연도별 자산가액 한도 초과현황

구 분	총계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7년	2019년
재산한도액	-	2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3억원	3억원	3억원
한도초과자	474명	366명	54명	25명	6명	2명	4명	17명

- 다만,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 서울거주 자산보유 가구 중 자산 4억원 미만 가구가 56%이고,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관련 자문단 회의 결과⁷⁾ 재산한도액을 4억원~4억3천만원 정도 범위에서 조정하자는 의견도 있어 합리적인 자산가액 기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자산조회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는 것은 보도상 영업시설물이 운영자의 생계수단이므로 안정적 운영을 보장할 필요가 있고, 잦은 자산조회에 따른 서울시와 자치구의 행정력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것으로 보임

7) '21.6.3., 6.15.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 관련 자문단 회의 개최